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와 학문적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홍익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학술연구개발 활동과 그 결과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과 연구원(대학원생 포함)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10.11.1〉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대필·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9.7.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1., 2019.7.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신설 2019.7.1.〉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9.7.1.〉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7.1.〉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7.1〉

4. “대필”이라 함은 제목·목차 설정, 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내용의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0.11.1., 개정 2019.7.1.〉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2019.7.1.〉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9.7.1.〉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19.7.1〉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개정 2019.7.1〉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9.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6.6.1.〉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확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 중 대학원생과 관련된 사항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는 대학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0.11.1〉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6.6.1.〉
③ 예비조사 업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교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본교 관계 교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진술내용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8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